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4 | 2023.10.11 (2023.09.25~10.0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10. 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9.25~10.09)

10월 10일부터 제21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제200호부터 계속해서 국정감사 관련 주요 이슈, 일정 등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감이 마무리되는 시점(10/27)까지 각 상임위별로 논의되는 주요 국감내용들에 대해서는 매주 핵심위주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 강화하기로 하여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 추가,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천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금년 12월 중 5천호의 민간 물량을 공공전환하는 등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 제공키로 하였으며,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어,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며,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 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동 예고안에는 연구데이터의 정의, 적용범위, 공개대상, 이용방법, 통합플랫폼 구축 등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9/25~10/9까지 총 5건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출된 바,

- ▷(유 의 동의 원 대 표 발 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유 정 주 의 원 대 표 발 의)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 ▷(이 정 문 의 원 대 표 발 의)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변 재 일 의 원 대 표 발 의)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진 선 미 의 원 대 표 발 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 시정 등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0/10(화) 국회 법사위 등 통 10개 위원회의 국감이 시작될 예정(전체 국감일정은 아래 본문 국정감사 종압일정표 참조)이며, 과방위는 10/10(화) 10시 상임위 전제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외통위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 변경 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 7
-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기재부) 9
-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 13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 13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 1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 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14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부) 15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5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 15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 1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 17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2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5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7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28

3. 법률 발의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29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3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3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6인)	31
• 인터넷신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3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익동의원 등 10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35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3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3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3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2인)	3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22인) ...	3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6인)	3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4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6인)	4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4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등10인).....	4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43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6인)	4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44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4인)	45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46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3인) ...	4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1인).....	47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48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인)	4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4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49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50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5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5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	5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52
•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2인).....	53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9. 21) [바로가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5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57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57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5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61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국정감사 일정
2. 상임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25~10.09) [바로가기](#)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에너지·자원)
- 메타버킨스 판결 (IT)
- 월간 노동 뉴스레터 (노동)
-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노동)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2023-09-26

정부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음.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임.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없이 달성
- ②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 강화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 추가
 - 금년 11월 중 수도권 중심으로 8만 5천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 금년 12월 중 5천호를 민간 물량 공공전환하는 등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 추가 확보
- ③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
 -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 유도

- ◆ 공공은 **공급목표 달성** 및 **공공물량 추가 확충**으로 공급 정상화 견인
- ◆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 유도

중점 추진과제

공공 주택공급 확대

- 1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민간 공급 활성화

사업여건 개선

-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 3 분양→임대전환 공급 촉진
-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 5 인허가 절차 개선
- 6 건설인력 확충
-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 1 PF대출 보증 확대
- 2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 3 중도금 대출 지원

非아파트 사업 지원

- 1 非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 2 非아파트 규제 개선

도심공급 기반 확충

- 1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 등 논의
-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 현장 규제·애로 해소

2023-10-05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함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어, 한층 더 높은 경계심을 갖고 시장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거래로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등도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힘

이차전지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첨단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아울러,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2027년까지 자율운항 등 42개 핵심기술 확보와 선박 탄소배출량 저감 서비스 등 39개 민간부문 서비스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

기업 현장규제개선 방안으로는

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비용 경감 지원

【이차전지 제조 공정(설)의 설치기준(안)】

	일반취급소 일반기준	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주요 구조부 (벽·기둥·바닥 등)	내화구조로 하되, 구획벽은 두께 70mm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화구조
창 가부 (유리 종류)	설치 금지	설치 허용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
경사 여부	경사를 둘 것	누출 위험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 경사 면제
배관 재질	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또는 PTFE

- 반도체 스크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여 온도계의 설치·관리 등 과도한 설비 유지·보수로 인한 부담 경감**

*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 → 소각시설로 분류시 온도계 부착 의무 有 / 반응시설로 분류시 無

** 반도체 공장 사업장당 수백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생산장비 설치·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의 행정부담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시,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허용

②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및 조속한 상용화 지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구 분	내 용
모빌리티 수단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이동수단
모빌리티 기반시설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 및 보조시설 또는 공작물 ·첨단기술이 적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위 시설에 부착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을 보조하는 유·무형 시스템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이용해 사람·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

- 실증사업 등을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및 미래용 복합 주유소 전환 가속화
- 상이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을 통해 전기차 제작업체 애로 해소

③ 환경·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

-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등록비용 부담 절감
- 녹색기업에 대해 「환경오염시설법」 상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환경 기술확산 등 지원
-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차년도 총량삭감의 이중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과감한 벤처투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3가지 핵심어(도전적 투자 유도, 시장친화적 운용, 감독체계 선진화) 제시

2023-10-05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함

’23년 벤처투자 시장은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 투자 편중이 완화되면서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자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전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 강화

- 원칙적으로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하여 신생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 등 도전적 투자 촉진
 - *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투자사(VC) 요건을 ▲업력 3년 이내(기존)에서 5년 이내로, ▲운용자산규모 500억원 미만(기존)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개편
- ’23년 신규 결성된 ‘모태자펀드’에 적용 중인 ‘투자촉진 인센티브’와 별도로, ’21~’22년 ‘결성펀드’가 ’23년에 조기 투자 집행 시 ’24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고 출자비율(10%p) 및 관리보수 요율(0.2%p) 상향
-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GP)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
 - * ▲상장과정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단순변경으로 자본잠식으로 인식되거나, ▲자본잠식 이후 유의미한 후속투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관리보수 미삭감

②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점 출자분야, 자원배분 등 ‘모태펀드’ 투자방향을 민관(民官)이 함께 논의하고 출자 공고 전에 제시하는 등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 ‘모태자펀드’의 주요 의무 위반(투자 의무 미준수 등)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한국벤처투자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경영·성과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임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하고 보수체계 정비
 - * 임원별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법령준수·리스크관리·하급자감독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

③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관리·감독 체계 선진화

-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에게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도록 개편
-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 추진전략>

비전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투자생태계 조성
기본 방향	◆ 도전적인 벤처투자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 ◆ 출자자 등 시장이 신뢰하는 업계 관행 정착
추진 전략 및 과제	① 도전적 벤처투자 유인책 강화
	①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 ②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기준 개선 ③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강화
	②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 운용
	①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출자 분야별 자원배분 등) 도입 ② 모태자펀드 사후관리 의견수렴 강화 ③ 한국벤처투자의 책임경영 및 성과중심 보상 강화
	③ 벤처캐피탈 관리 감독체계 고도화
	① 벤처투자 제재 양정 기준 체계화 ② 벤처캐피탈 사회적 책임 강화 ③ 벤처캐피탈 관리·감독 기반 확충

II. 주요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시행 다만, 제40조제1항제13호 나목·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제35조제5호마목, 제40조제1항제13호나목)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시행
-------	----------------	---------------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제80조제7항을 제8항)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4 시행
-------	------------------	---------------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내국지급수단을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해당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감독 및 검사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하여 해당 권한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3조제2항, 제18조제4항제6호, 제35조, 제37조제2항제1호 등)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9 시행

시·도지사 등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2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보고 또는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약 및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을 전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리단의 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의2제1항제2호, 제5조의5, 제6조제2항, 제11조의2 신설, 제13조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9 시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 대상을 ‘관계 서류나 장부’뿐만 아니라 디지털 파일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자료’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89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의2, 제1조의4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등)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25 시행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됨

이에 따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의 요청 절차, 촬영 거부의 구체적 사유, 촬영한 영상의 열람·제공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산 수습의료기관의 인정 요건 및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9조의9 등)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9 시행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표 4, 별표 5 등)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01 시행

다만, 제3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을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1조, 제22조 삭제, 제23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9 시행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은 자동차매매업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및 손해배상 관련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315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

이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제13조의12 및 제13조의13 신설)

-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발기인은 창립총회 의결 후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각각 하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3조의14, 제13조의15 및 별표 1의4 신설)

- 운영위원회는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사업계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총회가 조합원 중 선임하는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위반 시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신용보증기금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③ 보증의 종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의 내용 (제13조의16 및 제13조의17 신설)

-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으로 정하고,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사업의 내용 및 보증수수료 등으로,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로 및 공제금 등으로 각각 정함

④ 재무건전성의 기준 (제13조의19 신설)

-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은 공제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결산기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도록 함

⑤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의 업무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2 제2호우목 및 주목 신설)

-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개선명령, 해당 조합의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29 시행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을 통해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불공정 수탁·위탁거래 조사 대상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에 구제한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6호, 2023. 1. 3. 공포, 10. 4. 시행 및 법률 제1931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

이에 따라,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점기준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개선요구 등을 받기 전에 위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1조~제13조 삭제,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신설, 제18조의3 신설, 제27조제3항 신설 등)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0-12 시행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32호, 2023. 7. 11. 공포, 10. 12. 시행)됨

이에 따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 (제10조의2제1항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성명(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임직원의 경우 등록번호 포함)·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②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6조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그 행사방법 및 절차를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함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③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 제2호나목 · 차목 및 카목 신설)

-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27 ~11.6

최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이 대규모화하고 있으나,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제공하는 신용보증의 한도액을 기존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며 이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가 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의 7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 (안 제29조제2항제1호)
 -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된 바, 동 과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보증한도를 상향
- ②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 (제34조의8제5항 및 제34조의8제6항 삭제)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 ③ 기존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법 시행('24.1.19.)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mailto:기획재정부_민간투자정책과) (전화: 044-215-5455, 팩스: 044-215-812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등을 정하고 있음 (제54
조제4호)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 각호로 정한 구비서류에는 해당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
하지 않고 있어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바, **본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조회서를 구비서류로 제
출하게 하여 등록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신청 등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에 관한 각종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각종의 규정을 정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추가 (안 제66조의3제2항제5호)**
 - 법 제54조제4·5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신청인과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를 제출받도록 첨부서류 추가
- ② **보완기간 연장 및 보완기간의 처리기간 불산입 근거 신설 (안 제66조의3제4항 단서)**
 -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근거 신설
- ③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신고, 합병신고, 휴업·폐업·법인해산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서식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규정 신설 (안 제66조의3제6항)**
- ④ **등록의 처리기간 명시 및 고시로 위임한 등록증 교부의 근거규정 신설 (안 제66조의3제7항)**
 - 등록의 처리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적법한 등록요건을 갖춘 신청인에게 고시로 정한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안 제66조의3 제1·2항)**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전자민원 처리 근거 명확화
- ⑥ **등록·신고 및 결격사유 확인 등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마련 (안 제70조의2 본문 및 제
3·4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
번호 등 처리 가능한 사무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상속·합병 신고, 휴업·폐
업·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및 등록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신설
- ⑦ **기타 조문 정비 (안 제66조의3제1항 본문)**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신청인’으로 법령상 약어 추가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통신자원정책과) (전화: 044-202-6668, 팩스: 044-202-6041)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연구데이터의 정의 (안 제2조제2호)

-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중 수집·관리가 필요한 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데이터로 한정함

② 적용범위 (안 제3조)

-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인문사회,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③ 연구데이터의 공개 (안 제4조)

- 「저작권법」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기관의 판단하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데이터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④ 연구데이터의 이용 (안 제5조)

-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⑤ 연구데이터의 보유 (안 제10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와 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고, 경우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⑥ 선도적용기관 지정 (안 제11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되, 연구데이터의 선제적인 관리·활용이 필요한 기관을 선도적용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를 부여함

⑦ 분야별 전문센터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

- 바이오, 소재 등 연구데이터의 공동활용이 활성화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⑧ 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3조)

- 공개된 연구데이터의 통합검색·분석·활용, 연구개발기관 등의 저장소 구축·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⑨ 분쟁조정 근거 마련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mailto:과학기술정보통신부_통신자원정책과) (전화: 044-202-6668, 팩스: 044-202-6041)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25
~11.06

기술검토 신청 등 사용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사항의 합리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의 간소화·명확화하고, 매설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 밖에 현행 규정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검토·완성검사 시공자 대리 신청허용 (안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와 완성검사도 가스공급시설처럼 시공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토록 함

② 정기검사증명서의 뒷면(이면) 기재 폐지 (안 제25조제6항 및 제7항)

- 정기검사 증명서 발급 시 뒷면(이면) 기재를 폐지
- ※ 정기검사증명서 발급시스템의 전자화에 따라 정기검사 후 팩스, 이메일,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운영중임

③ 행정관청의 굴착신고 통보시기 및 내용을 명확화 (안 제52조제3항)

- 행정관청이 EOCS에 굴착공사 정보제공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통보내용도 명확히 규정

④ 긴급 굴착공사의 배관 안전관리 행정절차 간소화 (안 제56조)

- 긴급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가 굴착공사 현장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⑤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배관의 색상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 (안 별표5 제3호가목5) 및 별표7 제1호가목1))

- 도시가스 저압용 매설 배관의 색상을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황색을 추가하여 PE100 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

⑥ 가정용 매립배관 가스사용시설의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문구 명확화 (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

-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하지 않는 가정용 매립배관 사용시설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토록 문구를 명확히 하여 국민 혼란 방지

⑦ 기타 인용 조항 정비 (안 별표7제1호가목3))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중 오류가 있는 인용 조항을 정비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3989, 팩스: 044-203-4766)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05
~11.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 (안 제4조제2항)

- 「환경오염시설법」 제9조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시에는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으나,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를 규정

②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 (안 제36조제2항)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③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 (안 별표6, 안 별표8)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④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안 별표14)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함

※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

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0.05
~11.1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4년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값의 배출허용기준 초과판단기준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 세부사항 위임 (안 제9조의8)
 -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 ②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 (안 제24조의2, 제24조의4, 제24조의6, 별표13의2)
 - 통합환경관리인 겸직허용사유 규정 (안 제24조의3, 별표13의3)
 - 교육 및 경비, 업무위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4조의7, 제24조의8, 제24조의9, 별표 13의4)
 - 행정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14)
- ③ 타법개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초과여부 판단기준 개정 (안 별표8)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22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허가배출기준 초과판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함

※ 문의처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tel:044-201-6717)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05
~11.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정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및 변경협의 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초급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설명회·공청회 생략 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규정 삭제 (안 제3조제1호 삭제)
 - 주민방해 등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없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을 검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생략 근거 마련 (안 별표3 비교12 신설)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결정한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전화: 044-201-7280, 팩스: 044-201-7284\)](tel:044-201-728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25
~11.06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 (안 제67조제1항)

- 설계·시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기에 어려운 사업개요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로 변경하고, 공사 시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항목을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 (안 제67조제2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실시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방안으로 변경함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 정비 (안 제67조제3항)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와 중복하여 작성하는 심사 결과 항목을 이행 확인 결과로 변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항목은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으로 변경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전화: 044-202-8936, 팩스: 044-202-8027\)](tel:044-202-8936)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06
~11.15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09호, 2023. 6. 20. 공포, 2023. 12.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13조의2)

- 법 개정으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http://www.kftc.go.kr) (전화: 044-200-4962, 팩스: 044-200-4979)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0.06
~11.15

경영간섭 금지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도모하고,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영활동 간섭 세부 유형 신설 (안 제11조의2)

-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법률상 금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을 시행령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선임·해임 및 이들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 결정 등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에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경영간섭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함

②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마련 (안 제23조)

- 법률 개정으로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사실, 조정의 결과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고, 협의회의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도출되면 그 즉시 수소법원에 결과 통지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③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안 [별표 1])

-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함
- 이를 통해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 피해구제를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고자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전화: 044-200-4961, 팩스: 044-200-4979\)](tel:044-200-496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25
~11.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당이득 산정방식 (안 제338조의3, 별표 23)

-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입,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

②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안 제389조의2)

-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

③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 (안 제379조제2항, 제380조제3항)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1, 팩스: 02-2100-2678\)](tel:02-2100-2681)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27
~11.06

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자금출처에 따른 사사(acknowledgement)의 표기가 가능하도록 명세서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전략기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을 정비함에 따라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출원서·명세서 등의 서식 정비 (안 별지서식 제14호, 제15호, 제57호)
 - 특허출원서 서식 및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 중에서 기여율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세부항목을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기재할 때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명세서 서식에서 【기술분야】란에 사사(acknowledgement)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함
- ②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등 우선심사의 대상 정비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 (안 별지서식 제9호, 제22호)
 - 우선심사신청서 서식 및 보정서 서식에서 전문기관 선행기술(디자인, 상표)조사의뢰 우선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함
- ③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안 별지서식 제13호)
 - 디자인보호법 제36조제2항이 삭제되는 내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류제출서 서식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함

※ 문의처 : 특허청 특허제도과 (전화: 042-481-8153, 팩스: 042-472-474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에 대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다른 주주에게 매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정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기존주주의 의결권에서 지분율을 희석시키므로 기존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회사의 경영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임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그의 우호적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이는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여 임의로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결과와 동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유를 인정하지만, 이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형해화할 염려가 있어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달리 볼 필요가 있는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안 제342조)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2023-09-25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방지를 위하여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를 두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업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특성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자피해 신고를 받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시중지명령의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및 제45조)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3인)

2023-09-27 발의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1년 반 만에 12개의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이 운영 중이며, 그 중 8개는 신규 등록된 것임

현재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 펀드의 외부출자 제한은 개별 펀드(출자조합)당 40퍼센트인데, 개별 펀드당 적용되는 규제 때문에 출자자 구성과 펀드의 전략적 목적 반영 측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별 펀드에 대한 출자금액이 아닌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CVC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6인)

2023-09-27 발의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용이 일상화되고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는 사람의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생체정보로 정의하고,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정무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2023-10-06 발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확산시켜 첨단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혁신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섰고,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2022년 3분기 기준) 역시 전년 동기대비 4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벤처·스타트업 기업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투자 빙하기를 보내고 있음

또한 국내 총 벤처투자(2022년 기준) 57,183억 원 가운데 79.7% (45,608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엑셀러레이터의 67.5%, 벤처캐피탈의 90%도 수도권에서 운용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소외현상은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해져 있는 상황임. 이같은 벤처투자의 지방차별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재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 지역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고 있지만 강원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는 지역 금융회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권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당선됐으며, 2022년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균형발전 지역공약」에서 <기업금융 중심의 충청권 지역은행 설립>을 제시하였고, 같은 날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자료 <국정과제⑪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의 세부내용으로 “지방은행 부재로 금융양극화 심화지역(충청권 등)에 지방은행 설립 지원 및 선진국형 지역 벤처투자 금융기구 설립 추진”을 약속하기에 이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대전에서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산학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덕밸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스턴식 금융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음

대전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기업부설연구소 951개가 소재하고, 특허출원 누적 24만여 건, 기술이전 연 1,655건 등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KAIST에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수학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집약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벤처 창업의 요충지인 만큼 지역 은행 설립을 통해 ‘창업-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5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023-09-26 발의

현행법은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에 사소한 변경을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이른바 “우회덤핑”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활엽수 합판에 외피를 침엽수로 변경하여 수입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중국산 H형강(대형 구조물의 골조나 토목공사에 널리 사용되는, 단면이 H형인 봉 모양의 압연재)에 마구리판(H형강 양 끝에 덧대는 판)을 용접하여 기타 철구조물로 수입하는 등의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피해 업체 등의 신규 덤핑조사 신청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 장기간의 조사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신청 업체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고 국내산업의 피해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소한 변경을 가한 경우 그 변경을 가한 물품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덤핑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0인)

2023-09-25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내국인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최근 해외 OTT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인 OTT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대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과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3. 21.)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국가전략기술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주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추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이를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첨단기술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외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함 (안 제10조제1항제2호)
- ②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함 (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 ③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3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인 영상제작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 the top, OTT)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2023-10-04 발의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중전에는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해외건설업 플랜트 공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오히려 국내 모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역울한 처지에 있음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점으로 진출하였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추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 (안 제39조의2 제1항)
-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 (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 ③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 (안 39조의2제2항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2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주택임차 자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40%를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은 규모가 104.4억원에 이르고, 수십억원의 연봉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도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고 있어 균형적인 소득분배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전세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비가 상승함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52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유동화전문회사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그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배당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배당하지 아니한 이익인 이익준비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2023-10-04 발의

현행법은 여객운송 영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영역은 동법 제정(1977년)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개인 자가용 보유 일반화 및 고속철도 운행 등 교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학생, 저소득층 등도 고속버스를 주로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변화하였음

그러나 2016년 시외고급고속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고속버스가 시외우등고속버스와 상위 등급 고속버스인 시외고급고속버스로 세분화되었으나 동법 시행령에 시외우등고속버스에 대한 과세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시외고급고속버스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화 운행형태가 유사한 시외직행버스 및 이용 운임이 높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는 시외고급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일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여객운송 영역을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한정하여,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 제7호가목)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의원 등 12인)

2023-09-26 발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메신저, 동영상, 온라인상거래, 배달중계, 모빌리티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증대되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

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해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8조의2 신설)

이와 함께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22인)

2023-09-27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6인)

2023-09-25 발의

현행법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통하여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저작권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EU에서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하여 데이터마이닝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교육·조사·연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사업자의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의5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2023-09-26 제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한 경우 조사 의뢰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인수·합병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핵심기술 수출의 사전 승인 등 (안 제11조)

-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이 없고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안 제11조의2)

-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인수·합병 등의 상대방인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미승인 또는 미신고의 경우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명하도록 함

③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안 제11조의3 신설)

- 해외인수·합병 등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의원영의원 등 10인)

2023-09-26 발의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연동을 기피하기 위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을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탁기업이 그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1조 및 제25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原事業者)가 제조·유통 등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조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이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5항 신설, 제40조의2제2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2023-09-27 발의

LPG충전소는 넓은 사업부지,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향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시장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며 수송용 LPG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인건비·관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휴·폐업으로 LPG충전소가 소멸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확보 등 향후 수소충전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우려로 소비자들의 비대면 거래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LPG차 셀프충전(해외에는 보편화되어 있음)이 도입되면 수송용LPG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됨

이에 LPG충전소가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폐업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LPG충전소가 미래 융·복합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존 쇠퇴산업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1항 및 제46조의2 신설)

수소경제는 화석에너지에서 생성되는 탄소를 최소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소의 생산부터 최종 활용까지 연계된 관련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제도적으로 공고히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임

그런데 2022년 6월에 개정된 현행법은 수소의 안전과 유통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수소시장 관리기관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의 인정·인증·검증 기관 등의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을 개선하여 수소의 생산·공급·유통·활용 등을 원활히 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정수소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7호의5 신설)
- ②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유통·안전 등에 관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정수소의 구매 또는 공급의무를 부여할 수 있고, 청정수소 입찰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9 신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수소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시장 관리기관은 수소시장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10 신설)
- 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3년 단위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5항,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인증전담기관을 지정·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의2 신설)
- ⑦ 수소시장 관리기관과 인증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의5 및 제5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의원 등 16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창업 지원,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상생협력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가맹사업자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 가맹사업자 인증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증진을 유도하고 가맹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포함한 관리권자가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기반 및 편의시설의 노후화 현상 등이 나타남과 함께,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직적인 입주업종 관리로 인해 첨단·신산업 등의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재생사업 추진 시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중복 부담 제거, 구조고도화사업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업종 심의지구 설치 및 기반시설 영향 확인절차 도입을 통해 첨단·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안 제2조제19호)
- ②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안 제22조 및 제22조의4)
- ③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자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33조제10항 등)
- ④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제11항 신설)
- ⑤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33조제12항 신설)
- ⑥ 입주기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기업에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38조의3 신설)
- ⑦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안 제44조의2 신설 등)
- ⑧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5조의2, 제45조의21제1항제10호 등)
- ⑨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안 제45조의4제1항제6호의2 신설)
- 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45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 ⑪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안 제45조의21제1항제3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4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사업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과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추위가 심해지고 있어 냉방·난방기기를 활용하여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인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각 가정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모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사용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그 직전 3개월 간 각 가정이 사용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에너지복지를 구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8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0인)

2023-10-04 발의

현행법은 에너지절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에너지사용자로부터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또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금융·세제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규정한 금융·세제상 지원만으로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기금에서 해당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 시장의 확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3인)**

2023-10-04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

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등 11인)

2023-10-06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3-09-25 발의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시험·연구를 말하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 대상자의 동의 하에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여 실시하는 경우나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등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 ②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거나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시험 등은 임상시험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7항)
- ③ 임상시험계획 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안 제50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2023-09-25 발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밀키트와 같은 간편조리식품의 시장규모가 늘고 있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밀키트 시장은 19년 4백억원에서 24년 7천억원 규모로 전망함. 최근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의 독점 판매기한을 보장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의약품 재심사제도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이에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기존 재심사제도 대상 의약품 외에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의약품도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제약업체도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보다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그동안 의약품 재심사제도와 중복 운영에 따른 제약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안 제31조의6 및 제32조의2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2인)

2023-10-05 발의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약사법」에 따라 2배로 규정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담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담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하려는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라 운영 중인 의약품등 제조업 또는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대상에 의약품 수입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안 제62조, 68조의8, 86조의5, 제89조 및 제92조)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이 제정·시행 후 3년간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었으나, 첨단재생의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촉진 및 연구 과정 관리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첨단재생의료 기관 평가·인증 제도 도입과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및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이상반응 보고 기한을 중대성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효율화를 추구하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 체계를 만들려는 것임 (안 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보건복지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2023-10-06 발의

식량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증가에 비례하여 인체에 해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관리 및 수입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농업,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그에 관한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②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하여 위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는 자가 위해 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알리도록 함 (안 제6조)
- ③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 ④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수입등을 하려는 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 (안 제8조)
- ⑤ 비유전자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안 제9조)
- ⑥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
- ⑦ 표시가 없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⑧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3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과 그 위험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 관리 과정에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이하 “사망재해”) 중 45.3%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50세 이상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전체의 74.86%로 2/3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연령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2022년말 기준 5,858천명으로 2012년 기준 취업자(3,071천명)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35%가 50대, 24.6%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산업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임

그러나 근로환경·조건은 여전히 고령자의 신체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도 청·장년 세대의 평균적인 신체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중 고령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고려하면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재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배려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여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직접·간접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중 직접영향지역은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함. 그러므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 거주 주민과 같이 생계 등에 필요한 지원금이나 이주대책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시설·상공업시설 설치, 상하수도시설 및 환경·위생시설 설치 등의 간접적 지원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이나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를 보전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5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2023-09-27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형사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취지임에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받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세 의원 등 12인)

2023-09-27 발의

드론은 촬영, 레저를 넘어서 건설관리, 농·임업, 통신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최근에는 드론 운송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중요하나, 현재 드론관련 법률은 항공기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에서 무인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어 기술 변화에 따른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고, 국민들과 관련 사업자들이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음

무인항공기급 대형드론의 경우 유인항공기와 공역을 동시에 사용 하고 국제간 이동도 가능하여 현재의 항공 관련 법률 체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소형드론은 유인항공기와 공역이 분리·운영될 뿐 아니라, 국내 비행에 한정되고 운영 성격이 달라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소형드론의 특성에 부합하는 안전 및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신고, 조종자격, 사업체 관리 등 드론 안전관리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소형드론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업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혁신 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소형드론 안전관리 관련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소형드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통신기술, 무선설비 등 비행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②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여하여 소형드론을 비행하려는 경우 조종자 증명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12조)
- ③ 소형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가시권·비가시권 비행, 군집비행 등 비행규칙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4조)
- ④ 소형드론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 ⑤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하여 안전위해요인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게 하고, 보고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제한하는 등 안전자율보고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 ⑥ 소형드론운송사업 관련 등록, 결격사유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7조)
- ⑦ 소형드론운송사업자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38조 및 제39조)
- ⑧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 소형드론운송사업자는 비행로를 지정하여 승인 받도록 근거를 마련 (안 제40조)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인증검사 간소화 등을 위하여 정비업자의 정비능력을 확인하고, 정비능력을 인정 받은 정비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은 경우 인증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7조)

4. 본회의 주요 통과 법안 (2023. 10. 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10-06 의결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의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상품으로, 약 3,500만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위한 서류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서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안 제102조의6 신설)
- 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2조의7제1항 및 제2항 신설)
- ③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위탁 시에는 전송대행기관 포함)는 요양기관 등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2조의7제4항 신설)
- ④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202조제3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3-10-06 의결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제어·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양자팍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의 구축 및 국제협력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②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7조)
- ③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0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팍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 ⑦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 ⑨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지원,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

2023-10-06 의결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안 제33조의2제4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0인)

2023-10-06 의결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용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등10인)

2023-10-06 의결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제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기업자 지원을 위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함 (안 제13조 및 제39조)
- ②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명시함 (안 제1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10-06 의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함 (안 제2조제9호)
- ②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정의함 (안 제2조제12호의10 및 제12호의11 신설)
- ③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의 정의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각각 추가함 (안 제2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 ④ 전기공급 의무 대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추가함 (안 제14조)
- 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신사업의 약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의2제3항제2호다목)
- ⑥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 등에게 공급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5제2항 신설 및 안 제16조의5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10-06 의결

현행법상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고, 상표등록 거절대상인 동일·유사한 상표가 실제 거래시장에서 공존하고 있으나, 양도방식 등으로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음

또한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는데,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에서는 지정상품 일부만 포함하는 경우도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상표로 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한편,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가 반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 규칙 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부분대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납부된 상표등록료의 반환 사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타 지식재산권 법률과 달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33조제2항)
- ② 상표등록요건 판단시기에 관한 규정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 ③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6항 신설)
- ④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 ⑤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안 제59조제5항 신설)
- ⑥ 상표등록료 반환 대상에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 ⑦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안 제84조)
- ⑧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 (안 제106조제2항 신설)
- ⑨ 선출원(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취소심판의 제척기간을 규정함 (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122조제2항)
- ⑩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 (제183조제1항제3호 삭제)
- ⑪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함 (안 제187조 및 제200조)
- ⑫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안 제193조의3 신설 및 제220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23-10-06 의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 없음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료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참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3. 1. 1. 시행 예정)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존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10-06 의결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고, 선박소유자의 잘못이 아닌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그 부담을 선박소유자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도를 보완하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
- ②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규정을 정비함 (안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및 제122조)
- ③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성능검사제도를 도입함 (안 제110조)
- ④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 등)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종합일정표)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10(화) (10개 위원회)	법사위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7개 기관	대법원 10:00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27개 기관	국회 10:00
	기재위	국세청,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	
	외통위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	
	국방위	국방부, 부대 및 관련기관 27개 등 30개 기관	국방부 10:00
	행안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10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10:00
	문체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10:00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00
	국토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10/11(수) (8개 위원회)	법사위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5개 기관	국회 10:00
	정무위	금융위원회	
	교육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등 11개 기관	정부세종청사 10:00
	외통위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4개 기관	국회 10:00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	
	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노위	환경부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12(목) (10개 위원회)	기재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10:00
	과방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5개 기관	국회 10:00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등 9개 기관	합동참모본부 10:00
	행안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회 10:00
	문체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등 10개 기관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8개 기관	
	복지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노위	고용노동부	
10/13(금) (10개 위원회)	국토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회 10:00
	법사위	감사원	
	정무위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등 4개 기관	
	교육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기관	주중국대사관 10:00
	외통위	<아주반> 주중국대사관	
	국방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국회 10:00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등 4개 기관	
	문체위	[현장시찰]	목포 10:00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 5개 기관	국회 10:00
10/14(토) (1개 위원회)	산자중기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3개 기관	
	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14개 기관	
	외통위	<아중동반> 주이스라엘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10:00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시간
10/15(일) (1개 위원회)	외통위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미국대사관 10:00

2. 상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10/10(화) 10:00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외통위	전체회의	10/10(화) 09:50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김석기의원 대표발의) -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대안)(위원장) -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추가의 건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11(수) 10:00	글로벌 협력을 통한 탈탄소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국회글로벌혁신 연구포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11(수) 14:00	2023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국회 여성· 아동인권포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12(목) 13:30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김두관·이용빈· 양정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자료집 등	10/12(목)	「이달의 입법민원」 (2023. 9월호) 발간	국회사무처	
	10/11(수)	「금주의 서평」 제648호 발간 - 도서명 :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 저 자 : 박정훈	국회도서관	
	10/12(목)	「현안, 외국에선?」 제68호 발간 -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10/12(목)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0/12(목)	「2023~203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발간		
	10/13(금) 14:00	「민사소송 선진화 방안 -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대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5(월) 09:30	위성통신 시대 개막,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중·저궤도 통신용 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	박완주·정필모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9/25(월) 10:00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9/25(월) 10:30	반지하 주택 해소 국회 토론회	강득구·김두관· 김민기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9/26(화) 13:30	바이오가스 정책 및 기술 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환경부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4(수) 10:00	돌봄노동자 건강권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국회토론회	강은미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등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0/04(수) 14:00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춘식 의원실, 가평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5(목) 10:0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윤창현·박성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5(목) 15:00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	조수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0/06(금) 10:30	전기공사업 진흥시책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자료집 등	9/25(월)	「팩트북」 제104호 발간 - 정부혁신	국회도서관	
	9/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2호 발간 - 미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입법동향		
	9/26(화)	「현안, 외국에선?」 발간 -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간병) 분야 현황과 과제 : 노노(老老)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		
	9/27(수)	「금주의 서평」 제647호 발간 - 도서명 : 언어로 본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 저 자 : 조현용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9.25~10.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25(월)	에너지 · 자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9/26(화)	IT	메타버킨스 판결
9/27(수)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9/27(수)	노동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사유인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